

# 대구예술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 2006.03.08. 교무위원회)  
(개정 2007.12.18. 교무위원회)  
(개정 2008.03.13. 교무위원회)  
(개정 2008.05.29. 교무위원회)  
(개정 2010.02.11. 교무위원회)  
(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5.05.12. 교무위원회)  
(개정 2016.11.08. 교무위원회)  
(개정 2018.02.26.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20.12.14. 교무위원회)  
(개정 2022.08.01. 교무위원회)  
(개정 2024.01.15. 교무위원회)  
(개정 2024.08.19. 교무위원회)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우리 대학교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학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조 (등록)** 등록은 매학기 개강전 학교에서 설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납입된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휴학자제외)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3조 (수강신청의절차)**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전산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수강신청기간)**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을 정하여 한다.(개정 2010.8.2)

**제5조 (신청제한)** ① 학칙 제38조에 의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전공주임과 협의를 거쳐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교무처장이 이수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일부과목에 대해서는 교무처에서 임의 삭제하여 무효로 처리한다.

③ 동일교시에 배정된 교과목은 중복해서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④ 매학기 15학점 미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각종 장학금 급여대상에서 제외 된다.

⑤ 단,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및 동일학년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미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각종 장학금 급여대상에서 제외 된다.(신설 2024.08.19.)

**제6조 (학과목 선정순위)** 수강신청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하급 학년의 미취득 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하며 먼저 이수를 요하는 과목부터 순서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단, 1·2학기 연강되는 과목은 해당학기에 맞추어 수강하여야 한다.

**제7조 (계절학기수업)** ① 방학기간중 학점 미취득자에게 학점취득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학점당 최소 15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08.19.)

③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소정양식)를 수강신청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학점단위로 정한다.(개정 2024.08.19.)

④ 계절학기의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소요 학점으로 산입한다.

⑤ 삭제 (개정 2024.08.19.)

**제8조 (졸업학점)** ① 교양과목 15학점 이상, 전공과목 75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에 달하여도 졸업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2009년 이전입학자(편입생제외)는 교양과목 20학점 이상,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취득 [97~02학번 중 2006.3.1기준 4학년학생(휴학생포함)은 전공 50학점이수] (개정 2010.2.11.)(개정 2010.8.2)

② 단,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및 동일학년 학생은 전공과목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졸업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08.19.)

**제9조 (수강신청한 과목의 정정 및 취소)** 일단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강의시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 및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소정기간(수업일수 1/3선 이내)내에 수강정정 및 취소할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전공주임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정정 및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과목의 자동폐강)** 수강인원이 전공과목의 경우 10명미만 교양과목의 경우 30명 미만일때 해당교과목을 폐강한다. 단, 학과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 제 3 장 시험 및 성적평가

**제11조 (시험)** 각 과목에 대한 중간 및 기말시험은 매학기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한다.

**제12조 (성적평가방법)** 각 교과목의 성적은 수시고사 성적과 출석, 예습, 복습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수성에 따라 실험 및 실기시험 성적은 평상시의 성적과 출석등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 (성적대체)** ① 등록을 필한 자가 수업일수 15분의 11이 경과한 후 군입대 휴학을 한 경우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2.26)

② ①항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출석 및 수시로 평가한 시험성적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다만, 일반휴학자에게는 성적대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추가시험 신청)** ① 병역의무, 천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추가시험 신청서(소정양식)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추가시험 허가를 받은 자는 담당교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중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시험의 성적은 A급이상을 불허한다.

**제15조 (부정행위)**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으며 부정행위를 한 이후의 당해 시험기간중의 모든 교과목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 (시험성적의 급락)** 시험의 급제는 60점 이상을 말하며 그 미만 점수는 낙제로 하고 학적부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재수강)** 낙제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인 경우에는 타 교과목을 선택 이수 할 수 있다.

**제18조 (학업성적 산출)** 학업성적의 평균점수는 각 과목의 취득평점에 그 교과목 학점수를 곱한값의 총계를 신청 총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19조 (학점취소 및 재이수)** ① 취득한 교과목 중에서 C학점이하일 경우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은 재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C학점 이하를 받아 재이수를 원할 때는 재이수 신청(수강신청)시 그 과목의 학점포기를 작성, 교무처에 제출하여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은 취소한 과목과 교과구분, 교과목명, 학점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재이수 신청교과목의 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제한에 포함되며, 재이수 과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재이수를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시에 수강신청서의 재이수 여부란에 ○표하여 수강신청한다.

⑤ 재이수 신청교과목은 정정이나 변경을 할 수 없다.

**제20조 (학사경고)** ① 다음학기 개강전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적부 상벌란에 기재 한다.

② 직전학기에 학칙 제38조에 의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전공주임과의 협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이수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 4 장 성적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제21조 (성적표의 열람)** 매학기의 이수 성적은 성적확정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다.(개정 2010.8.2.)(개정 2022.08.01.)

**제22조 (이의신청)** ① 온라인으로 성적열람 후 성적정정기간내에 담당교수께 문의할 수 있다.

② 성적표에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기일이 경과하면 정정할 수 없다.

제23조 삭제(개정 2010.8.2)

제24조 삭제(개정 2010.8.2.)

## 제 5 장 실기교사 자격과정

제25조 (과정의 설치) (삭제 2024.08.19.)

제26조 (이수시기) (삭제 2024.08.19.)

제27조 (발급신청 및 선발) (삭제 2024.08.19.)

제28조 (이수과목 및 관련과목) (삭제 2024.08.19.)

## 제 6 장 휴학 및 복학

제29조 (휴학구분 및 구비서류) ①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업 일수의 1/3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을 경우 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입대로 인한 휴학 :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보호자 면담결과 보고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및 전공주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휴학중이던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휴학원 제출절차)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연서의 휴학원서에 휴학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휴학허가) ① 휴학허가 및 휴학기간 연장은 총장이 결정한다.

②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최초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질병 및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히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귀향신고 의무)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영 후 신체 검사 결과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귀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제출기간) ①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휴학은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2항에 의한 휴학은 입영일 2주전부터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등록금 인정) ① 등록금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전에 일반휴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인정한다.

② 등록금 납입하고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경과한날부터 총 수업일수의 2 분의 1 경과전에 일반휴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을 납입하고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후 일반휴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질병휴학일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복학절차)**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여야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자의 복학은 해당학기 등록 기간중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학시에는 복학원서 및 복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적 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입영휴학자의 복학 조건불허)** 입영휴학한 자가 귀향 또는 군복무 단축 등으로 학기도중 복학을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학기가 1/3 이상을 경과한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제 7 장 재입학

**제37조 (재입학의 조건)** ① 재입학은 해당학과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되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8조 (삭 제)

## 제 8 장 학생결석처리

**제39조 (결석의 허용한도)** 결석은 한 학기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결석으로 인한 성적 불인정)** 결석일수가 한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결격판정을 받은 자에게는 그 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1조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결석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① 직계가족의 사망(증빙서 첨부)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으로 한다.

②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증빙서 첨부)은 3일간으로 한다.

③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은 학생처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④ 총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의 참여로 인한 결석은 학생처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⑤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으로 한다.

⑥ 대학에서 인정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공주임이 통보한 명단과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08)

⑦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은 재직기간으로 한다.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은 수강 중인 교과목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은 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원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공인출석인정은 최종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08)

(개정 2020.12.14.)

⑧ 기타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 (개정 2016.11.08)

**제42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했을경우에 한하며, 해당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기당 3주 이내의 기간은 출석 실격의 대상이되는 결석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결석계의 제출시기, 장소)** ① 결석계는 결석사유 발생전후 1주이내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 교수와 전공주임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1조 제3항 또는 6항에 의한 출석인정은 명단 통보권자가 교무처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결석계나 확인문서를 접수한 교무처장은 학생의 결석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통지서를 발급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1조 7항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제44조 (출석인정원 미제출로 인한 결석처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결석한 자라도 본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원을 제출치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 9 장 (삭 제)

제45조 (삭 제)

제46조 (삭 제)

제47조 (삭 제)

## 제 10 장 편입학

**제48조 (편입학 자격)** ① 우리 대학교 제1학년 2학기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1학년 1학기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라야 한다.

(개정 2007.12.18)

② 우리 대학교 제2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1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라야 한다.(개정 2007.12.18)

③ 우리 대학교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라야 한다.(개정 2007.12.18)

④ 우리 대학교 4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3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라야 한다.(개정 2007.12.18)

⑤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학사편입학 할 수 있으며 제3학년 전체정원의 5%이내, 학과정원의 10%이내에 한하여 정원외로 편입학 할 수 있다.(개정 2007.12.18)

제49조 (삭 제)

제50조 (삭 제)

제51조 (삭 제)

## 제 11 장 교과과정의 이수

**제52조1 (교과이수)** ① 학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별첨과 같고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 편입학·복학·재입학한 자가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년도 기준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수강하고자 하는 연도의 교과과정표에 의거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7학기와 8학기 수강학점은 8학점 이상을 원칙으로하고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개정 2010.8.2)

④ 군복무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5.12.)

⑤ 단,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및 동일학년 학생의 7학기와 8학기 수강학점은 1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신설 2024.08.19.)

**제52조2 (학습권보장)** ① 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 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2 장 (삭 제)

제53조 (삭 제)

제54조 (삭 제)

제55조 (삭 제)

제56조 (삭 제)

제57조 (삭 제)

제58조 (삭 제)

제59조 (삭 제)

제60조 (삭 제)

제61조 (삭 제)

제62조 (삭 제)

제63조 (삭 제)

제64조 (삭 제)

## 제 13 장 졸업의 기준

**제65조 (졸업의 기준)**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학기는 4년 8학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취득학점은 총계 1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및 동일학년 학생의 취득학점은 총계 12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2024.08.19.)

③ 교과과정 이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2.11)

1. 교양과목 : 15학점 이상

2. 전공과목 : 75학점 이상

단, 2009년 이전입학자(편입생제외)는 교양과목 20학점 이상,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취득[97~02학번 중 2006.3.1기준 4학년학생(휴학생포함)은 전공 50학점 이수] (개정 2010.8.2.)

단,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및 동일학년 학생의 교과과정 이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전공과목 : 60학점 이상(개정 2024.08.19.)

## 제 14 장 유급

**제66조 (유급)** 학칙 제37조에 의한 수료대상자 중 평균평점이 2.00 미만인 자는 1회 에 한하여 유급처분 시킬 수 있다.

**제67조 (삭제)**

## 제 15 장 학점등록

**제68조 (학점등록 대상)**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중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3.13)

**제69조 (학점등록금)** ① 학점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29)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② 학점단위가 소수점 이하일 때는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③ 재입학생중 학점등록 대상 학생은 전 1항에 의거한 학점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개정 2010.2.19)

⑤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무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 제 16 장 학부운영(신설 2022.08.01.)

**제70조(학부운영)** 학부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규정 내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전공배정 전에는 학부장의 승인과 전공배정 후에는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한다.(신설 2022.08.01.)

### 부 칙

① 본 학칙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졸업학점), 제 65조(졸업의 기준)는 2010학년도 1학년(2010학번)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편입생 제외)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 41조 7항의 출석인정은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8.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2025년 2월 4일 관련 학칙 개정 후 시행함).

(별지1)

100점 만점 환산표

등급	평점	100점(환산)	등급	평점	100점(환산)	
A+	4.50	95-100	C+	2.75	77.5	
A°	4.45	94.5		2.70	77	
	4.40	94		2.65	76.5	
	4.35	93.5		2.60	76	
	4.30	93		2.55	75.5	
	4.25	92.5		2.50	75	
	4.20	92		C°	2.45	74.5
	4.15	91.5			2.40	74
	4.10	91			2.35	73.5
	4.05	90.5			2.30	73
	4.00	90	2.25		72.5	
B+	3.95	89.5	2.20		72	
	3.90	89	2.15		71.5	
	3.85	88.5	2.10		71	
	3.80	88	2.05		70.5	
	3.75	87.5	2.00		70	
	3.70	87	D+	1.95	69.5	
	3.65	86.5		1.90	69	
	3.60	86		1.85	68.5	
	3.55	85.5		1.80	68	
	3.50	85		1.75	67.5	
B°	3.45	84.5		1.70	67	
	3.40	84		1.65	66.5	
	3.35	83.5		1.60	66	
	3.30	83		1.55	65.5	
	3.25	82.5		1.50	65	
	3.20	82	D°	1.45	64.5	
	3.15	81.5		1.40	64	
	3.10	81		1.35	63.5	
	3.05	80.5		1.30	63	
	3.00	80		1.25	62.5	
C+	2.95	79.5		1.20	62	
	2.90	79		1.15	61.5	
	2.85	78.5		1.10	61	
	2.80	78		1.05	60.5	
				1.00	60	